

약관공시사항

□ 기본사항

개정일	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26-06-25	2026-06-30	판매중	미적용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

해당약관 조항	
수정 전	수정 후
<p>제15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</p> <p>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용도의 유용 1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, 2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15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</p> <p>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용도의 유용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, 추가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신규여신(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) 취급이 제한되며, 타 금융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자금용도의 유용 행위가 「형법」 제231조, 제234조, 제347조,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 또는 신고 됩니다.</p>